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262호

나.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

다. 발의일자 : 2016. 6. 9.

라. 회부일자 : 2016. 6. 9.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연령으로 그 연령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동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로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나.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을 새롭게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66조의3, 「다문화가족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입법예고 : 생략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9일 김생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62호로 발의되어 2016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66조의3에 따른 경로우대자의 연령으로 그 기준을 일치시키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감면 대상자로 명시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간의 체계 적합성 제고와 감면대상자간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감면대상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안 제9조제1항제4호)

- 동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제4호는 현행 수강료 감면대상자인 만 60세 이상의 자를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만 65세)로 하여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동 조례를 기초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만65세 이상 인자에 대해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수강료를 감면하여 왔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되어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현행 노인의 공공시설 이용 촉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된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이용요금의 할인이나 무료이용에 적용되는 연령을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별 도서관 이용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 경로우대자를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는(자치구별 수강료 감면대상자 규정 현황은 [별첨]참고)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제4호가 감면대상 노인의 연령을 상위법령 및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행정운영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는 감면대상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바, 시민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입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이¹⁾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강료 감면대상자별 감면 비율을 정하는 것은 결국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시행규칙상의 수강료 감면 비율은 추후 조례상의 별표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감면대상자의 명료화에 대한 의견(안 제9조제1항제5호)

- 동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제5호는 현행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 시행규칙 [별표]상에 규정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 50%를 감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례상에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규칙에 따라 2009년 이래로 다문화가

1)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족 구성원을 수강료 감면대상자로 하여 왔습니다.

- 이는 조례와 시행규칙간의 통일적 체계를 유지하여 법규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표] 다문화가족 수강료 감면 내역(2009년~2015년)

(단위: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건수	12	43	44	40	36	34	31	240
금액	340,400	1,004,850	1,054,950	825,600	1,096,800	903,600	784,050	6,010,250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별첨]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수강료 감면대상자 규정 현황

연번	자치구	근거 자치법규 (조례 또는 규칙)	감면대상자
1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에게는(막내 자녀 12세까지) 80퍼센트, 국가유공자·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1~3급은 70퍼 센트, 경로우대자 8세 이하의 어린이는 50퍼 센트, 장애인 4~6급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강동구	감면규정 없음	
3	강북구	감면규정 없음	
4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5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자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 인 3. 「노인 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 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
6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9조제2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구로구	감면규정 없음	
8	금천구	감면규정 없음	
9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및 장난감도 서관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연번	자치구	근거 자치법규 (조례 또는 규칙)	감면대상자
			<p>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6.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영유아
10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1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p>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2.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구12	동작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자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3.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연번	자치구	근거 자치법규 (조례 또는 규칙)	감면대상자
			<p>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p> <p>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p> <p>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p>
13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별표]	<p>1.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및 동행한 보호자 1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만 5세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p> <p>2. 1/2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 이내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마포구 자원봉사등록회원에 한함)</p>
14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p> <p>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p> <p>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p> <p>4. 65세 이상의 노인</p>
15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및 제29조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원제 운영시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별표3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 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p> <p>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p>

연번	자치구	근거 자치법규 (조례 또는 규칙)	감면대상자
			<p>를」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p> <p>4.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p> <p>5. 구에서 발행한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해당자녀</p>
16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p> <p>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등록장애인</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p> <p>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p> <p>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p> <p>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p> <p>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p> <p>8.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p>
17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p>②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p> <p>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p> <p>4.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p> <p>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p> <p>6.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p>
18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	<p>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p> <p>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p> <p>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p>

연번	자치구	근거 자치법규 (조례 또는 규칙)	감면대상자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9	양천구	감면대상자 규정 없음	
20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자 5. 「노인복지법」규정에 따른 경로우대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21	용산구	감면대상자 규정 없음	
22	은평구	감면대상자 규정 없음	
23	종로구	감면대상자 규정 없음	
24	중구	감면대상자 규정 없음	
25	중랑구	감면대상자 규정 없음	

관계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11.30., 타법개정]

-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비 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6.6.2.] [법률 제13536호, 2015.1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도서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